

04

인도네시아 건설관련 인허가 법령집

약어 및 참조

건설 서비스 협회

전문가 협회

건설 서비스를 위한 상업적 실체의 설립, 허가 및 등록



약어 및 참조

AMDAL	Anali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 / 환경영향평가	MOHA	Ministry of Home Affairs 내무부
APBD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Daerah / 지역예산	MPWH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 공공사업주택부
APBN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 국가예산	OSS	Online Single Submission 온라인 단일 신청(이하 OSS)
API	Angka Pengenal Importir / 수입업자 식별번호	OSS 관리기관	Lembaga Pengelola dan Penvelenggara OSS OSS 관리 및 시행기관 (이하 OSS 관리기관)
API-U	Angka Pengenal Importir Umum / 일반 수입업자 식별번호	PJBU	Penanggung Jawab Badan Usaha 건설업체 대표자
API-P	Angka Pengenal Importir Produsen / 생산자 수입업자 식별번호	PJK	Penanggung Jawab Kegiatan 작업책임자
BADAPSKI	Badan Arbitrase and Alternatif Penyelesaian Sengketa Konstruksi Indonesia / 인도네시아 건설분쟁 중재원	PJT	Penanggung Jawab Teknis 기술책임자
BANI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 인도네시아 중재센터	PLN	PT Perusahaan Listrik Negara (Persero)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공사(이하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BAPPENAS	Badan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 / 국가개발 계획청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s 민관협력사업
BKPM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 투자조정청	PT PMA	Perseroan Terbatas Penanaman Modal Asing 외국인투자법인
BPJT	Badan Pengatur Jalan Tol / 고속도로 감독청	RO	Representative Office 건설대표사무소
BPN	Badan Pertanahan Nasional / 국가 토지청	ROE	Region Owned Enterprise 지방정부운영기업(이하 지방정부기업)
BPPSPAM	Badan Peningkatan Penyelenggaraan Sistem Penyediaan Air Minum / 상수도개발청	SBU	Sertifikat Badan Usaha 건설사업자등록증
CMEA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 경제 조정부	SKA	Sertifikat Keahlian 전문가자격증
DPR	Dewan Perwakilan Rakyat / 의회	SNI	Standar Nasional Indonesia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DPRD	Dewan Perwakilan Rakyat Daerah / 지방의회	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중소기업
IBE	Implementing Business Entity / 프로젝트회사 (주로 PPP 에서 사업주가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를 의미함)	SOE	State Owned Enterprise 국영기업
IUJK	Izin Usaha Jasa Konstruksi / 건설업허가	SPPL	Surat Pernyataan Kesanggupan Pengelolaan dan Pemantauan Lingkungan Hidup 환경관리서약서(환경관리 및 감시 능력에 관한 서약서)
IPBUJKA	Iz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nstruksi Asing / 외국건설대표사무소 허가	UKL-UPL	Upaya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dan Upaya Pemantauan Lingkungan Hidup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감시계획
LKPP	Lembaga Kebijakan Pengadaan Barang/Jasa Pemerintah / 조달청	VGF	Viability Gap Funding 사업 운영성 확보상 부족자금 조달 (이하 부족자금 조달)
LPJK	Lembaga Pengembangan Jasa Konstruksi / 건설서비스개발청		
MCI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cs / 정보통신부		
MEMR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 에너지광물 자원부		
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 환경산림부		
MOF	Ministry of Finance / 재무부		



건설 서비스 협회

Organization	Abbreviations
건설 컨설팅 서비스	
Ikatan Nasional Konsultan Indonesia	INKINDO
Ikatan Arsitek Lansekap Indonesia	IALI
Persatuan Konsultan Indonesia	PERKINDO
Perhimpunan Perusahaan Perencana Nasional	P3N
Asosiasi Perusahaan Konsultan dan Pengawasan Konstruksi Indonesia	ASPEKONI
Asosiasi Konsultan Indonesia	AKOINDO
건설 통합 서비스	
Gabungan Perusahaan Nasional Rancang Bangun Indonesia	GAPENRI
Asosiasi Kontraktor Terintegrasi Indonesia	AKTI
Himpunan Perusahaan Terintegrasi Indonesia	HIPTI
Pengusaha Kontraktor Terintegrasi Nasional	PERTINAS
건설 시공 서비스	
Gabungan Pelaksana Konstruksi Indonesia	GAPENSI
Gabungan Perusahaan Kontraktor Nasional	GABPEKNAS
Asosiasi Kontraktor Indonesia	AKI
Asosiasi Kontraktor Air Indonesia	AKAINDO
Asosiasi Kontraktor Listrik dan Mekanikal Indonesia	AKLI
Asosiasi Aspal dan Beton Indonesia	AABI
Asosiasi Perusahaan Nasional Telekomunikasi	APNATEL
Asosiasi Pengusaha Konstruksi Nasional Indonesia	ASPEKINDO
Asosiasi Kontraktor Konstruksi Indonesia	AKSI
Gabungan Perusahaan Konstruksi Nasional Indonesia	GAPEKSINDO
Asosiasi Kontraktor Umum Indonesia	ASKUMINDO
Asosiasi Kontraktor Sumber Daya Air Indonesia	AKSDAI
Asosiasi Kontraktor Mekanikal Indonesia	AKMI
Asosiasi Kontraktor Jalan dan Jembatan Indonesia	AKJI
Asosiasi Kontraktor Konstruksi Indonesia	AKKI
Asosiasi Kontraktor Tata Lingkungan Indonesia	AKTALI
Asosiasi Pelaksana Konstruksi Nasional	ASPEKNAS
Asosiasi Perusahaan Konstruksi Nasional	ASPERTANAS
Asosiasi Perusahaan Pengeboran Air Tanah Indonesia	APPATINDO
Gabungan Pengusaha Kontraktor Nasional Indonesia	GAPEKNAS
Gabungan Perusahaan Kontraktor Air Indonesia	GAPKAINDO
Gabungan Kontraktor Indonesia	GAKINDO

Organization	Abbreviations
Asosiasi Kontraktor Konstruksi Indonesia	AKSINDO
Asosiasi Pengusaha Kontraktor Seluruh Indonesia	APAKSINDO
Asosiasi Kontraktor Seluruh Indonesia,	ASKINDO
Asosiasi Kontraktor Bangunan Konstruksi Indonesia	AKBARINDO
Asosiasi Kontraktor Ketenagalistrikan Indonesia	AKLINDO
Asosiasi Kontraktor Mekanikal dan Listrik Indonesia	ASKOMELIN
Asosiasi Pengusaha Pelaksana Kontraktor dan Konstruksi Nasional	APPEKNAS
Asosiasi Kontraktor Elektrikal Indonesia	AKEI
Gabungan Pelaksana Konstruksi Nasional	GAPENSINAS
Asosiasi Kontraktor Listrik Nasional	AKLINAS
Persatuan Kontraktor Listrik Nasional	PAKLINA
Asosiasi Kontraktor Nasional	ASKONAS
Himpunan Kontraktor Perkeretaapian Indonesia	HIKKAPI
Gabungan Rekanan Konstruksi Indonesia	GARANSI
Gabungan Perusahaan Konstruksi Indonesia	GABPEKSI
Gabungan Pengusaha Kontraktor Indonesia	GABPKIN
Asosiasi Kontraktor Kelistrikan Indonesia,	AKKLINDO
Asosiasi Kontraktor Umum Nasional	ASKUMNAS
Asosiasi Kontraktor Mekanikal Elektrikal Indonesia	AKMELINDO
Asosiasi Konstruksi Pemborong Indonesia	ASKOPINDO
Gabungan Kontraktor Kelistrikan dan Mekanikal Indonesia	GAKLIMDO
Himpunan Kontraktor Ketenagalistrikan dan Mekanikal Indonesia	HIKKMI
Himpunan Perusahaan Konstruksi Indonesia	HIPSINDO
Himpunan Jasa Konstruksi Indonesia	HJKI
Asosiasi Perusahaan Pracetak dan Prategang Indonesia	AP31
Asosiasi Rekanan Konstruksi Indonesia	ARKINDO
Asosiasi Perusahaan Pengusaha Kontraktor Nasional	PERKONAS
Asosiasi Perkumpulan Rekanan Jasa Konstruksi Indonesia	PERJASI
Asosiasi Pengusaha Perusahaan Konstruksi Indonesia	ASPERKONI
Asosiasi Pelaksana Jasa Konstruksi Nusantara	APJAKON
Asosiasi Kontraktor Seluruh Indonesia	AKSI
Perkumpulan Kontraktor Profesional Indonesia	PERKOPINDO
Asosiasi Pengusaha Jasa Konstruksi Indonesia	APJAKINDO
Perkumpulan Konstruksi Kelistrikan Indonesia	AKKLINDO (178)
Asosiasi Kontraktor Air Indonesia	AKA
Asosiasi Konsultan Indonesia	ASAKINDO



전문가 협회

Organization	Abbreviations
Himpunan Ahli Konstruksi Indonesia	HAKI
Himpunan Pengembangan Jalan Indonesia	HPJI
Ikatan Arsitek Indonesia	IAI
Asosiasi Profesionalis Elektrikal – Mekanikal Indonesia	APEI
Persatuan Insinyur Indonesia	PII
Himpunan Ahli Teknik Tanah Indonesia	HATTI
Ikatan Ahli Manajemen Proyek Indonesia	IAMPI
Himpunan Ahli Teknik Hidraulik Indonesia	HATHI
Ikatan Ahli Perencanaan Indonesia	IAP
Ikatan Arsitek Lansekap Indonesia	IALI
Komite Nasional Indonesia untuk Bendungan Besar	KNIBB
Himpunan Ahli Elektro Indonesia	HAEI
Perhimpunan Ahli Teknik Indonesia	PATI
Persatuan Insinyur Profesional Indonesia	PIPI
Asosiasi Ahli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Konstruksi Indonesia	A2K4-1
Himpunan Ahli Manajemen Konstruksi Indonesia	HAMKI
Asosiasi Tenaga Teknik Indonesia	ASTTI
Asosiasi Tenaga Ahli Konstruksi Indonesia	ATAKI
Asosiasi Profesi Perkeretaapian Indonesia	APKA
Ikatan Ahli Konstruksi Indonesia	IAKI
Ikatan Nasional Tenaga Ahli Konsultan Indonesia	INTAKINDO
Asosiasi Profesi Tenaga Ahli Konstruksi Indonesia	APTAKINDO
Asosiasi Tenaga Teknik Ahli dan Terampil Indonesia	ASTTATINDO
Himpunan Profesi Tenaga Konstruksi Indonesia	HIPTASI
Asosiasi Keselamatan Kesehatan Kerja dan Lingkungan	AK3L

Organization	Abbreviations
Asosiasi Profesi Mekanikal Elektrikal Indonesia	APMELINDO
Asosiasi Tenaga Teknik Konstruksi Indonesia	ASTEKINDO
Perhimpunan Tenaga Ahli dan Terampil Indonesia	PERTATI
Asosiasi Sumber Daya Manusia Konstruksi Indonesia	ASDAMKINDO
Gabungan Tenaga Ahli dan Terampil Konstruksi Indonesia	GATAKI
Himpunan Ahli Teknik Konstruksi Indonesia	HATSINDO
Asosiasi Tenaga Ahli Pemborong Indonesia	ATAPI
Asosiasi Tenaga Ahli Konstruksi Seluruh Indonesia	ATAKSI
Asosiasi Tenaga Ahli Konstruksi Nasional Indonesia	ATAKNAS
Forum Arsitek Lansekap Indonesia	FALI
Gabungan Tenaga Teknik Indonesia	GATTINDO
Tenaga Ahli dan Keterampilan Nasional	TAKONAS
Ikatan Quantity Surveyor Indonesia	IQSI
Asosiasi Profesi Tenaga Ahli dan Terampil Konstruksi Indonesia	APTAKSINDO
Asosiasi Tenaga Ahli Konstruksi Seluruh Indonesia	ASTAKINDO
Asosiasi Tenaga Ahli Teknik Indonesia	AATI
Perkumpulan Profesi Tenaga Konstruksi Indonesia	PERTAKINDO
Ikatan Tenaga Ahli Konstruksi Indonesia	ITAKI
Asosiasi Tenaga Ahli dan Terampil Konstruksi Nasional	ASTAKONI
Perkumpulan Tenaga Ahli Profesional Indonesia	PERTAPIN
Asosiasi Profesi Jasa Konstruksi Nasional	APSIJAKON
Perhimpunan Profesi Tenaga Konstruksi Indonesia	PROTEKSI
Perkumpulan Arsitektur Profesional Indonesia	PAPI
Asosiasi Tenaga Ahli Konstruksi Indonesia	ASTAKI
Gabungan Ahli Teknik Nasional Indonesia	GATENSI
Asosiasi Profesi Teknik Indonesia	APTI



건설 서비스를 위한 상업적 실체의 설립, 허가 및 등록

2.1 외국 건설 서비스 제공자

인도네시아에서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의 건설 서비스 제공자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상업적 실체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상업적 실체는 건설 대표사무소(RO, Representative Office)와 현지인 주주와의 합작을 통한 외국인투자법인(PMA Company 또는 PT PMA)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건설 대표사무소(RO)는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건설 대표사무소의 행위에 따른 효과는 곧 본사로 귀속됩니다. 반면, 외국인투자법인은 PMA Company 또는 PT PMA라 불리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게 되므로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보유 할 수 있으며, 주주들의 책임은 그들이 투자한 지분 한도 내로 제한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내 사업체의 형태로는 조합, 합명회사와 유사한 회사 등도 있으나, 외국인에게 투자가 허용된 형태는 유한책임회사뿐입니다.

RO 또는 PT PMA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인도네시아 소득세 법에 따라 납세자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설립, 허가 취득 및 보고 등과 관련하여 현지 법령상 적용되는 요건은 RO와 PT PMA 중 어떠한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RO는 PT PMA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설립이 가능하며, 단기 비즈니스나 초기 투자 단계에서 소수의 프로젝트만 수행하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더욱 적합합니다. 반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PT PMA의 형태가 보다 적합합니다. 아래 표는 RO와 PT PMA의 주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하 2.2 및 2.3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상술하겠습니다.

	건설 대표사무소(RO)	외국인투자법인(PT PMA)
법인격	독립된 법인격 없음.	독립된 법인격 있음.
수권자본금	최소 자본금 없음.	최소 500억 루피아 (건설 시공 서비스, 통합 서비스) 최소 100억 루피아 (건설 컨설팅 서비스)
최소 순자산	외국 건설사(본사)의 자산은 최소 500억 루피아 이상(건설 시공 및 통합 서비스)이거나 5억 루피아 이상(설계 및 감리 서비스)이어야 함.	PT PMA의 순자산은 최소 500억 루피아 이상(건설 시공 및 통합 서비스)이거나 5억 루피아 이상(설계 및 감리 서비스)이어야 함.

	건설 대표사무소(RO)	외국인투자법인(PT PMA)
(설립을 위한) 최소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시공 및 통합 서비스의 경우 외국 건설사(본사)는 최근 10년 이내에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 가치는 누적적으로 최소 2,500억 루피아가 되거나 단일 계약으로는 최소 833억 3천만 루피아 이상이어야 함. - 건설 설계 및 감리 서비스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 가치는 누적적으로 최소 25억 루피아가 되어야 함. - 인도네시아 외에서 쌓은 경험도 인정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시공 및 통합 서비스의 경우 PT PMA의 주주들은 최근 10년 이내에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 가치는 누적적으로 최소 2,500억 루피아가 되거나 단일 계약으로는 833억 3천만 루피아 이상이어야 함. - 건설 설계 및 감리 서비스의 경우 PT PMA의 주주들은 최근 10년 이내에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 가치는 누적적으로 최소 25억 루피아가 되어야 함. -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루어진 경험만 인정됨. 따라서 인도네시아 내 경험이 없는 외국 회사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현지 파트너를 선택해야 함
건설 공사의 형태	진보된 기술의 사용이 필요한 건설 공사로서 높은 위험을 내포 및/또는 계약 규모가 최소 1,000억 루피아(건설 시공 서비스의 경우) 또는 100억 루피아(설계/감리 서비스의 경우)인 건설 공사	진보된 기술의 사용이 필요한 건설 공사로서 높은 위험을 내포 및/또는 계약 규모가 최소 500억 루피아(건설 시공 서비스의 경우) 또는 100억 루피아(설계/감리 서비스의 경우)인 건설 공사
현지 파트너	RO는 수행하는 모든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JO(Joint Operation)를 설립하여야 함.	PT PMA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67%로 제한됨(ASEAN 국가의 투자자들은 70%): 그 외 나머지 지분은 현지 파트너 주주가 보유해야 함.



	건설 대표사무소(RO)	외국인투자법인(PT PMA)
설립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내에 주소 또는 법률상 거소가 있어야 함. -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민을 RO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함. RO 대표자는 RO 허가 신청 기간 동안 관련 면접을 수행하여야 함. - 법인소재지증명서, 법인 과세 등록증(NPWP), 사업자 등록 번호(TDP) 및 부가가치세 과세 등록 번호(SPPPKP)을 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된 투자를 BKPM을 통해 등록해야 함. - 설립 증서에 서명 후 공증을 받아야 함. -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법인소재지증명서, 법인 과세 등록증(NPWP), 사업자 등록 번호(TDP) 및 부가가치세 과세 등록 번호(SPPPKP)을 득하여야 함.
사업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관: 종래 BKPM에서 발급함, 다만 OSS 도입 이후 OSS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어야 함 - 종류: 대표사무소 설립허가(IPBUJKA)이며 별도의 사업허가는 불필요 함 - 유효기간: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관: OSS시스템을 통해 발급되어야 함 - 종류: 건설업 허가(IUJK) - 유효기간: 3년
허가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는 신규 허가, 갱신 허가 또는 변경 허가에 적용됨. - 설계/감리 서비스의 경우 5,000 달러 - 건설 시공 서비스의 경우 1만달러 - 통합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 대표사무소는 양쪽 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함. 다만, RO의 경우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지 의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아직 2가지 인허가를 모두 보유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허가(IUJK)의 경우 수수료 없음.

	건설 대표사무소(RO)	외국인투자법인(PT PMA)
활동 등록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의 유형을 일정한 자격 및 분류 기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등록증(SBU)을 득하여야 함.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의 유형을 일정한 자격 및 분류 기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등록증(SBU)을 득하여야 함.
정기 보고	연간 활동 보고 및 지식 이전 보고	투자 활동 보고, 연간 활동 보고, 수입 이행 보고
투자 인센티브	인센티브 없음	투자법상 인센티브(면세기간, 세금 우대, 기계류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등)

2.2 건설 대표 사무소

2.2.1 일반적 요건

외국 건설회사는 IPBUJKA를 취득한 후 RO를 통해 인도네시아내에서 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O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습니다. 즉 RO의 행위는 그 효과가 외국에 소재한 건설회사 본사로 귀속되며, RO는 자신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자산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건설서비스법에 의하면 RO 대표는 인도네시아 국민이어야 하며, RO 대표(사무소장)는 인도네시아내에서 외국 건설회사(본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RO를 통해 활동하는 외국 건설회사(본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a) 대규모사업자로서 상태를 유지하고 (대규모 요건(large qualification)을 갖춘 기업을 의미함),
- (b) RO 허가를 보유하여야 하며,
- (c) 현지 파트너와 JO(joint operation)을 설립하고,
- (d) 총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을 인도네시아 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하며,
- (e) 인도네시아 국민을 RO의 대표(건설 대표사무소장)로 지명하여야 하고,
- (f) 인도네시아 현지의 건설 자재와 기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 (g) 고도의, 최신의,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기술을 보유하여야 하고(다만, 현지의 경험과 지식을 무시하여서는 아니 됨),
- (h) 기술 및 지식 이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 (i) 관련 법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다만, 위 (e) 요건과 관련하여,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그 서신(MPWH Letter No. HK.01.04-Mn/66 dated 18 January 2018 to Chairman of BKPM)을 통해 동 규정의 의미가 RO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사항(Technical Operation)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내국민이 책임자로 선임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RO의 형식상 대표자까지 인도네시아 내국인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거의 모든 한국계 RO는 한국인을 RO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의 서신은 법령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공공사업주택부의 서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 또는 타 행정기관이 2017년 건설서비스법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국인을 RO의 대표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NOTE

건설 대표사무소인 RO 설치를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인도네시아의 RO는 다른 국가와 달리 건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본사인 외국건설회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 외에 현지 파트너를 선정하여 공동 운영을 하여야 하고, 규정상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자를 RO의 대표로 선임하여야 하며(물론, 실무는 위 설명과 같이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의 서신을 근거로 외국인을 RO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있음), 총 근로자 중 대부분을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자로 고용하여야 하는 등 제한(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1대 3 또는 1대 4의 비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받으므로, RO의 설립 및 운영에 상당한 제약 요소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2.2 최소 자격 요건

인도네시아 내에서 RO를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 건설회사의 본사는 대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순 자산은 500억 루피아(건설 시공 및 통합 서비스의 경우) 혹은 5억 루피아(설계 및 감리 서비스의 경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 건설회사의 본사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 (a) 건설 시공 및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근 10년 이내에 누적적으로 2,500억 루피아 이상의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들을 시행한 경험이 있거나 833억 3천만 루피아 이상의 가치를 지닌 단일 계약을 수행하였어야 함.
- (b) 건설 설계 및 감리 서비스를 위해서는 최근 10년 이내에 누적적으로 25억 루피아 이상의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들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함.

2.2.3 건설 대표사무소(RO)가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외국 건설회사는 RO를 통하여 고비용 또는 고가치의 대규모 프로젝트나 고위험 또는 첨단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한 건설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주택부는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고비용/고가치의 의미는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100억 루피아 또는 건설 시공 서비스의 경우 1,000억 루피어를 의미함. 이는 PT PMA 형태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보다 더 강화된 요건을 유의 할 것.

- (b) 고위험은 공공의 안전, 재산, 개인의 생명 및 환경을 위협 할 수 있는 건설 공사의 시행 또는 구조물/플랜트의 사용을 의미.
- (c) 첨단기술은 특수한 시공 방법, 첨단 기술 장비 또는 특수 건설 장비, 많은 전문가들이 요구되는 건설 공사의 시행을 의미.

고위험 또는 첨단 기술의 의미에 관한 보다 자세한 기준은 향후 관련 부서나 정부조직의 규정 등에 의해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의 경우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외국 건설회사가 RO를 통해 관련 건설 서비스 등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2.4 JO(Joint Operation)에 관한 요건

RO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 건설 프로젝트마다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와 JO(Joint Operation)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때 현지 파트너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a) 유한책임회사여야 하고
- (b) 인도네시아의 국민, 단체 또는 정부에 의해 회사 지분 100%가 소유되어야 하며
- (c) 대형 사업자 관련 건설사업자등록증(SBU)를 갖추어야 하고
- (d) 유효한 건설업허가(IJK)를 갖추어야 함.

다만, 위 (b) 요건은 공공사업주택부의 승인을 통해 면제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일정한 경우 공공사업주택부의 승인을 전제로 PT PMA 형태의 건설회사도 RO의 현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PT PMA인 현지 파트너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a) 인도네시아 현지 참여율이 65% 이상이어야 함.
- (b) 대표이사, 재무이사 및 인사담당이사등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담당하여야 함.
- (c) 해당 기업이 현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증된 기록을 보유하여야 함. 다만 본 요구사항에 대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공사업주택부에 현지 파트너가 현지 공급망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를 위해 현지 근로자의 우선적 채용, 현지 공급망 이용, 현지 자원 및 자재 활용 등에 대한 검증된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최종 결정은 공공사업주택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보임.

JO는 자격 평등, 서비스 평등, 연대책임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즉 현지 파트너의 자격 등은 외국 건설회사와 비슷한 수준이어야 하며 현지 파트너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엄밀하게 말해 외국 건설회사는 경제적 이익과 통제력을 모두 보유하면서 유령회사를 현지 파트너로 지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현지 파트너는 건설의 입찰, 낙찰 단계부터 공사의 이행 및 완공 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 하여야 하고 외국 건설업체(본사) 및 현지 파트너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JO 계약은 '컨소시엄' 혹은 '파트너십' 형태의 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JO 계약의 내용의 실질이 상호 하도급 형태로 구성되는 것은 JO 계약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는 최소 50%(설계 및 엔지니어링 작업을 포함한 건설 계획 작업의 경우) 또는 30%(건설 시공의 경우)의 작업 비율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 비율은 JO 계약에 명시되어야 하며, JO 계약 사본이 공공사업주택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건설 계획 작업(설계 및 엔지니어링 작업 포함)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100% 수행되어야 합니다. 건설 시공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소 50%가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부처에 의해 결정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대로 행하여져야 합니다.

이중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작업이 인도네시아내에서 100% 수행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외국 회사들이 까다롭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상당수의 외국 회사는 (다소 논쟁적이지만 건설의 영역 밖으로 분류되는) 국제 물품 판매 계약(이러한 계약에 설계,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요소가 포함됨)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제한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NOTE

인도네시아에 신규 진출한 A기업이 인도네시아 공기업 B가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에 입찰시점(당초 공기업 B가 배포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JO 구성 요건 충족 시점)이 아니라 입찰 결과 최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인도네시아업체와 JO를 구성 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결과 발주처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발주처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되는 조건들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안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2.5 인도네시아 인력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O에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보다 많아야 합니다.

또한 건설 대표사무소는 기술/지식 이전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각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한 명 이상의 현지 담당자의 보조를 받아야 하며, 해당 담당자는 지식 이전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됩니다. 건설 대표사무소는 기술/지식 이전 프로그램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기해 수행된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에 의해 수혜를 받은 인도네시아인이 작성한 진술서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연간 활동 보고서의 일부로서 공공사업주택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건설 대표사무소는

(a) 각 프로젝트 별 최소 1회 이상 기술 및 경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b) 공공사업주택부에 의해 추천 또는 지명된 특정인이 현장 교육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학술적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c) 건설 대표사무소 허가가 유효한 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2.6 설립 절차 및 허가의 취득

건설 대표사무소는 투자조정청(BKPM)으로부터 IPBUJKA라고 알려진 외국 건설 대표사무소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개설 할 수 있습니다. 건설 대표사무소 허가는 3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건설 대표사무소 허가를 취득 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전역에서 건설 서비스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건설 대표사무소 허가 신청시 건설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미화 5,000달러, 건축 시공 서비스의 경우 미화 10,000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통합 서비스(예를 들어 설계 시공(design build) 또는 EPC)의 경우에는 사무소가 양 수수료를 모두 지불하여야 합니다. 위 수수료는 신규 허가의 신청, 허가의 연장 또는 서비스 영역의 변경 시에도 적용됩니다.

건설 대표사무소 개설 및 허가 취득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한 준비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외국 건설회사는 RO대표(사무소장)를 임명하여야 하며 대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민이어야 합니다. 사무소장에 대한 임명장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득해야 하며, 공증된 임명장은 외국건설 대표사무소 허가(IPBUJKA)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RO대표는 사무소 공간의 확보 및 선서한 번역가에 의한 외국 문서의 번역 등 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자격증(SKA) 취득

건설 대표사무소는 사무소장 외에 기술책임자(PJT)와 작업책임자(PJK) 등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고, 이들은 반드시 전문가자격증(SKA)을 통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자격증(SKA)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최소 인원수는 건설 대표사무소가 수행하고자 하는 서비스 유형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각 서비스 유형별로 1인 이상의 담당 작업책임자(PJK)를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자격증의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 2.6.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SO 및 기타 인증

협회 가입 또는 건설사업자등록증(SBU) 취득을 위한 요건 중 하나로서, 건설 대표사무소는 일반적으로 ISO9001-2008, ISO14001, OHSAS18001 인증과 보건 및 안전 관련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외국 건설회사의 본사가 취득한 ISO 인증등도 건설 대표사무소가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위 인증들을 취득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서비스의 유형 및 관련협회의 재량에 의해 달



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 협회 등록

건설 대표사무소는 건설사업자등록증(SBU)을 신청하기 전에 건설협회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건설협회의 종류는 건설 대표사무소가 인도네시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비록 대부분의 협회는 외국인투자법인(PT PMA) 형태만을 회원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부 협회(대체로 규모가 큰 협회)가 건설 대표사무소도 회원으로 허용하고 있어 건설 대표사무소도 이를 통해 협회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 가입 요건, 가입신청 절차 및 가입비 등은 협회의 내부 규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건설사업자등록증(SBU) 취득

건설 대표사무소는 수행하고자 하는 각 서비스 유형을 건설서비스개발청(LPJK)의 관련 규정이 분류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설사업자등록증(SBU)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II. 2.5.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건설 대표사무소 허가(IPBUJKA) 취득

외국건설 대표사무소 허가는 투자조정청(BKPM)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시에는 건설사업자등록증(SBU)을 포함하여 관련 구비서류를 동봉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투자조정청(BKPM)은 RO 대표(사무소장)와 인터뷰 일정을 잡게 되는데 인터뷰의 주제는 인도네시아 건설 대표사무소의 설립 목적, 비전 및 사업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인터뷰 결과를 포함하여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투자조정청(BKPM)은 허가 수수료에 대한 납부 지침을 발급합니다. 허가 수수료 완납 후 해당 영수증을 투자조정청(BKPM)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 제출 후 투자조정청(BKPM)은 외국건설 대표사무소 허가의 발급을 처리합니다.

이후의 절차

건설 대표사무소 허가가 발급된 후, 건설 대표사무소는 소재지 증명서, 법인 과세 등록증(NPWP), 사업자 등록 번호(TDP), 부가가치세 과세 등록 번호(SPPKP)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설명은 2018년 정부규정 제24호가 제정 및 시행되기 전 규정을 전제로 한 설명으로, 2018년 정부규정 제24호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개정된 내용을 따라야 하는바, 대표적으로 소 투자조정청(BKPM)으로부터 건설 대표사무소 허가(IPBUJKA)를 받는 것에서 OSS 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 규정 시행 전과 후에 있어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2.2.5 보고 의무

건설 대표사무소는 연간 활동보고서(여기에는 지식 이전 보고서 및 건설 대표사무소에 관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간 활동 보고서는 www.silapta.pu.go.id 사이트를 통해 공공사업주택부에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전 1년 간을 다룬 보고서를 매년 1월 중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바 위반의 정도가 중대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투자조정청(BKPM)으로부터 외국건설 대표사무소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를 연장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주택부의 '기술적 추천서(technical recommendation)' 가 필요합니다. 공공사업주택부가 허가 연장을 원하는 건설 대표사무소에 대해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술적 추천서의 발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활동 보고서에는 건설 대표사무소 관련 정보, JO 파트너 관련 정보,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 JO 관련 정보(JO 계약서 사본 포함), 근로자 관련 정보(이력서 포함) 및 지식 이전 프로그램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설 대표사무소에 관한 정보의 변경(예를 들어, 주소지 변경 또는 사무소장의 교체 등)이 있는 경우 대표사무소는 이를 변경된 날로부터 최대 영업 10일 이내에 투자조정청(BKPM)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건설 대표사무소는 경고장 발부, 업무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대표사무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운용에 관한 2018년 대통령규정 제20호가 규정하는 보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건설 대표사무소는 고용주로서 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 근로자 운용 및 지식 이전 프로그램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2.3 외국인투자법인(PT PMA)

2.3.1 일반적 요건

인도네시아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외국 법인 포함)의 인도네시아내 사업 수행을 위한 모든 형태의 자본 투자는 전부 외국인 투자로 간주됩니다. 즉 투자 형태가 외국인의 단독 투자이든 인도네시아 투자자와의 합작 투자이든(합작 투자의 경우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수 지분이어도 관계 없음), 또는 직접 투자이든 간접 투자이든(즉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였든 또는 인도네시아 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였든) 모두 외국인 투자로 간주됩니다.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PT PMA로 알려진 외국인투자유한책임회사(이하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소유는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 로서 2019년 상반기 기준 2016년 버전 네거티브 리스트가 최신 버전임)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며 그 기준은 사업 분야에 따라 다양합니다.



주로 소규모 건설 프로젝트(이에 대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는 현지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현지 중소기업을 위해 남겨 두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고위험 또는 첨단기술(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함)과 관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회사를 외국인이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인도네시아 건설회사의 지분을 최대 67%까지 소유 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ASEAN 국가의 투자자들은 70%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외국인 투자제한리스트(2016년 버전 네거티브 리스트)의 외국인 소유권 제한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KBLI	사업 종류	최대 보유 가능 지분율
00000	단순·중급기술 및 저·중위험 및 500억 루피아 미만의 건설 시공 서비스	외국인투자 금지
00000	단순·중급기술 사용 및 저·중위험 및 100억 루피아 미만의 건설 사업·컨설팅 서비스	외국인투자 금지
00000	첨단기술 사용 및/또는 고위험 및/또는 500억 루피아 이상의 건설 시공 서비스	외국인투자 지분 67% 제한 ASEAN 국가-70%
00000	첨단기술 사용 및/또는 고위험 및/또는 100억 루피아 이상의 건설사업·컨설팅 서비스	외국인투자 지분 67% 제한 ASEAN 국가-70%

외국인투자 지분 외의 지분을 보유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내국 건설회사’ (national construction company, 즉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 정부 또는 인도네시아 국내 회사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국내의 건설회사를 의미함)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내국 건설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무역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건설 서비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GATS 약정의 자세한 내용은 본 해설서의 별첨 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2 최소 자격요건

외국인투자법인은 대기업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즉 대형 자격 분류에 속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순자산은 건설 시공 및 통합 서비스의 경우 500억 루피아 이상, 설계 및 감리 서비스의 경우 5억 루피아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려는 외국 건설 회사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건설 시공 및 통합 서비스의 경우: 최근 10년간 누적 최소 2,500억 루피아 이상의 관련 하위 유형의 사업 경험이 있거나 833억 3천만 루피아 이상의 단일 계약 경험이 있어야 함.
- 건설 설계 및 감리 서비스의 경우: 최근 10년간 누적 최소 25억 루피아 이상의 관련 하위 유형의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함.

건설 대표사무소의 경우와는 달리,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위와 같은 경험은 인도네시아 내의 것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외국 건설회사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위와 같은 경험이 없다면, 위와 같은 경험을 가진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회사를 현지 파트너로 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3.3 최소 자본금

외국인투자법인은 건설 시공 및 통합 서비스를 위해서는 최소 500억 루피아, 건설 컨설팅 서비스를 위해서는 최소 100억 루피아의 총 투자금이 필요하며, 위 각 총 투자금의 최소 25퍼센트는 설립 당시에 납입자본금으로 전액 납입되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건설 시공 및 통합 서비스의 경우, 건설업허가(IUJK) 내지 건설사업자등록증(SBU) 취득 시점 기준으로 최소 500억 루피아의 순자산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설립 단계에서 자본금 외 순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납입자본금 기준 최소 500억 루피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건설 시공 및 통합 서비스업을 영위할 PT PMA의 경우, 투자법상 설립 당시 총 투자금은 최소 100억 루피아로 되어 있으나, 문제는 건설업허가 또는 건설사업자등록증 취득시 최소 500억 루피아의 순자산이 필요하므로, 위 설명과 같이 최소 500억 루피어를 총 투자금과 최소 납입 자본금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즉, 비록 설립 당시에는 25%만 납입되면 법인 설립은 가능하나, 사업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500억 루피아가 납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적절함).

2.3.4 외국인투자법인 형태의 건설회사에게 허용되는 사업

외국인투자법인은 고비용, 고가치, 첨단기술 및 고위험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은 아래와 같이 공공사업주택부 규정에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 고비용/고가치는 2016년 외국인 투자제한리스트 기준 100억 루피아(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또는 500억 루피아(시공 서비스의 경우) 이상을 의미
- 고위험은 해당 건설 공사의 시행 또는 구조물/플랜트의 사용이 공공의 안전, 재산, 개인의 생명 및 환경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
- 첨단기술은 이러한 건설 작업의 시행을 위해 특수한 시공 방법, 첨단 기술 장비, 특수 건설 장비 및 많은 전문가가 필요함을 의미

고위험 또는 첨단기술의 의미에 관한 보다 자세한 기준들은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규제에 의해 향후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3.5 설립 절차

외국인 투자법인 형태의 건설회사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의 설립에 적용되는 절차를 따르는데, OSS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외국인투자법인 형태의 건설회사를 신규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a) 투자조정청(BKPM)에 투자 등록
- (b) 법인 설립 정관의 공증
- (c) 법무부 장관의 승인
- (d) 법인 소재지 증명서의 취득
- (e) 법인 과세 등록증(NPWP)의 취득
- (f) 은행 계좌 개설
- (g) 주주의 주식인수대금 납부
- (h) 사업자 등록 번호(TDP) 취득
- (i) 부가가치세 과세 등록 번호(SPPKP) 취득(필요시)

외국인 투자법인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일 경우, 해당 회사는 건설업허가 취득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IMTA)를 먼저 취득하여야 합니다. 건설업허가 신청 시 신청자는 환경 관련 문서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환경 관련 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 2.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OSS 시스템 도입된 이후 위 절차는 더 이상 활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OSS 시스템 도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법인의 설립 및 사업허가 취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a) 법인 설립 정관의 공증
- (b) 법무부 장관의 승인
- (c) 법인 소재지 증명서의 취득
- (d) 법인 과세 등록증(NPWP)의 취득
- (e) 은행 계좌 개설
- (f) 주주의 주식 인수대금 납부
- (g) 사업 고유번호(NIB) 취득
- (h) 부가가치세 과세 등록 번호(SPPKP) 취득(필요시)

2.3.6 건설업허가(IUJK)

건설회사(외국인 투자법인 포함)가 취득해야 하는 사업허가는 IUJK라고 하는 건설업 허가입니

다. 건설회사의 크기와 서비스 유형에 따라 기타 다른 등록증과 증명서 등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건설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은 건설 대표사무소 허가 취득 과정과 유사합니다. 단계별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a) 주요 직원에 대한 전문가자격증 취득
- (b) ISO9001-2008, ISO14001 및 OHSAS18001의 인증, 보건 및 안전인증 등 특정인증의 취득
- (c) 인도네시아 건설 협회 등록
- (d) 건설서비스개발청(LPJK)로부터의 건설사업자등록증(SBU) 취득
- (e) 투자조정청(BKPM)에 건설업허가(IUJK) 신청

다만, 2018년 정부규정 제24호가 제정됨에 따라, 건설업허가(IUJK)는 OSS 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됩니다.

2.3.7 보고 의무

외국인 투자법인은 투자활동 보고서, 연간활동 보고서 등을 비롯하여 여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활동 보고서는 신규 설립 회사의 경우 분기에 한 번, 회사가 상업 활동(commercial operation)을 시작했을 경우 반 년에 한 번씩 투자조정청(BKPM)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활동 보고서에는 투자 실현/자본금 납입, 인력 운용, 상품과 기계 및 기타 자재의 실현, 생산 및 마케팅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을 보고 할 경우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활동 보고서는 www.silapta.pu.go.id 사이트를 통해 공공사업주택부에 전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전 1년 간을 다룬 보고서를 매년 1월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활동 보고서에는 사업명, 가치, 위치, 사업주의 이름, 협력 업체, 사업 일정, 수입 물자, 주요 장비 목록, 하청 업체 및 근로자(외국인 및 현지 근로자)등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4 OSS 시스템

2.4.1 개관

2018년 6월 2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이라는 온라인 통합 허가 절차 시스템을 도입하는 2018년 정부규정 제24호를 공포하였습니다. 본 규정에 따르면 각종 허가의 신청은 전자적 형태로 통합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2.4.2 사업 고유 번호/Nomor Induk Berusaha(NIB)

OSS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기업들은 OSS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사업/상업/운영 허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기업들은 사업 고유 번호(NIB)를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NIB는 사업/상업/운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업자 ID의 역할을 합니다. NIB는 사업이 운영되는 동안 유효하며 사업자 등록 번호(TDP), 수입업자 식별번호(API)와 관세 접근 권한(custom access right)으로도 기능합니다. 따라서 NIB를 취득한 기업은 더 이상 TDP, API 및 관세 접근 권한의 등록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NIB 발급 시 OSS 관리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신청인을 지원하는 재정 기관(fiscal facility)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NIB가 발급된 기업은 인도네시아 건강보험(BPJS Kesehatan)과 고용보험(BPJS Ketenagakerjaan)의 가입자로서 자동 등록이 됩니다.

2.4.3 OSS 시스템을 통한 사업 허가 및 상업/운영 허가 발급

NIB를 부여받아 이를 등록한 신청인만이 OSS 시스템을 통하여 사업 허가(Izin Usah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사업이 특정 인프라 또는 시설의 개발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지역 허가, 환경 허가 및 건축 허가의 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 절차 역시 OSS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OSS 시스템은 공항 부지에 대한 지역 허가, 전력 관련 기술자격증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상업/운영 허가라고 볼 수 있는 허가과 관련된 절차도 처리하게 됩니다.

2.4.4 허가 제도의 개선

2018년 정부규정 제24호는 20개의 사업분야에서 규제 완화와 복잡한 허가제도의 간소화를 통해 허가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부 허가는 통합 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제외되어야 하는 허가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OSS 시스템을 통해 사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NIB 획득), 사업 허가신청, 상업/운영 허가신청과 같은 3가지 단계만을 거치면 됩니다.

2018년 정부규정 제24호의 부록에는 OSS 시스템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허가들의 세부 목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은 간소화된 허가들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다만 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허가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며, 관련 분야의 기존 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5 건설사업자등록증(SBU)

2.5.1 소개

건설사업자등록증(SBU)은 서비스의 유형 및 자격 분류에 기초하여 건설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외국 건설회사의 역량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2017년 건설서비스법은 건설사업자등록증 제도를 공공사업주택부가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자등록증 신청서는 '인증 기관' (certification agency)을 통하여 공공사업주택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년 상반기 기준까지 공공사업주택부가 SBU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구축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아직까지는 종래 규정에 따라 건설서비스 개발청(LPJK)이 SBU 발급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건설서비스 개발청(LPJK) 체제 하의 SBU 요건 및 발급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장래 공공사업주택부가 새로운 시행 규칙을 발표 할 경우 관련 요건 및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5.2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분류 및 하위 자격 분류

건설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은 소형, 중형, 대형과 같이 3가지 자격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은 연간 판매량, 재정 능력, 건설 인력의 가용성 및 건설 서비스 제공 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보유 자격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시장에 속하게 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는 고위험, 첨단 기술 또는 높은 계약 가격의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형' 으로 인정 받는 외국계 건설회사의 경우에만 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중 건설 시공 및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B2의 하위 자격을, 건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B의 하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SBU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설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요건과 능력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격/ 하위 자격	요건		능력			
	최소 순자산	최소 실적	작업능력	최대 단일 계약 가치	동시 사업 수	최대 서비스 유형
건설 시공 서비스						
대형/ B2	500억 루피아 이상	지난 10년간 누적 최소 2,500억 루 피아 이상의 관련 하위 유형 사업경 험이 있거나 833 억 3천만 루피아 이상의 단일 계약 경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6 or 1.2 x N (N은 지난 5년 간 동시에 진행 최대 사업 수, 즉 최대 동시 사 업 수를 의미합 니다.)	제한 없음. 다만, 소형 자 격으로 등록되 어서는 안됨.
건설 통합 서비스(설계 시공 또는 EPC 등)						
대형/ B2	500억 루피아 이상	지난 10년간 누적 최소 2,500억 루 피아 이상의 관련 하위 유형 사업경 험이 있거나 833 억 3천만 루피아 이상의 단일 계약 경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6 or 1.2 x N (N은 지난 5년 간 동시에 진행 최대 사업 수, 즉 최대 동시 사 업 수를 의미합 니다.)	제한 없음. 다만, 소형 자 격으로 등록되 어서는 안됨
건설 컨설팅 서비스(설계 및 감리 서비스)						
대형/B	5억 루피아 이상	지난 10년간 누적 최소 25억 루피아 이상의 관련 하위 유형 사업 경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정해지지 아니함	제한 없음

NOTE

한국계 A사는 5억불 상당의 인도네시아 건설 프로젝트 관련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참여를 준비하고 있던 중 인도네시아 순수 로컬 회사 C와 JO 결성을 검토하던 중 인도네시아 건설서비스개발청(LPJK)의 웹사이트를 통해 C사가 중소형 사업자 자격인 M 면허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사업 시공사로 참여가 어려움을 확인하고 C사에 대한 JO 파트너 영입 작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2.5.3 유형 및 하위 유형

건설 대표사무소(RO) 또는 외국인 투자법인 형태의 건설회사(PTPMA)에 의해 수행 될 서비스의 각 유형은 건설서비스 개발청(LPJK)의 관련 규정에 따른 유형 및 하위 유형에 기초하여 등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축 자문 및 설계전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 계획의 유형(AR) 및 건축 자문 및 설계전 서비스의 하위 유형(AR101)에 대한 건설사업자등록증(SBU)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되는 유형 또는 하위 유형의 수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최소 직원 수가 결정됩니다(자세한 내용은 II. 2.6.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대표사무소(RO) 또는 외국인 투자법인 형태의 건설회사(PT PMA)에 의해 수행 될 서비스의 각 유형은 건설서비스개발청(LPJK)의 관련 규정에 따른 유형 및 하위 유형에 기초하여 등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자문 및 설계 전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 계획의 유형(AR) 및 건축 자문 및 설계 전 서비스의 하위 유형(AR101)에 대한 건설사업자등록증(SBU)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되는 유형 또는 하위 유형의 수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최소 직원 수가 결정됩니다(자세한 내용은 1.2.6.1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시공 서비스의 하위 유형으로 등록된 서비스 제공자는 건설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하위 유형으로 등록 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유형 및 하위 유형의 최신 목록은 2014년 건설서비스개발청 규정 제5호와 2017년 건설서비스개발청 규정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5.4 건설사업자등록증 (SBU)취득 과정

건설 대표사무소(RO) 또는 외국인 투자법인 형태의 건설회사(PT PMA) 건설서비스 개발청(LPJK)에 직접 혹은 건설 협회를 통해 건설사업자등록증(SBU) 발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SBU 발급 신청시 건설 대표사무소(RO)의 경우 2015년 건설서비스개발청 규정 제1호에 따른 준비서류를 외국인 투자법인(PT PMA)의 경우 2014년 건설서비스개발청 규정 제5호 및 2017년 건설서비스개발청 규정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비 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심사자는 해당 건설업체 대표사와 인터뷰 일정을 잡게 되며 이 인터뷰에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 목적, 비전 및 사업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2.5.5 건설사업자등록증 (SBU) 발급 관련 다가올 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 건설서비스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등록증(SBU)은 공공사업주택부의 인증 및 등록 절차에 따라 발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서비스 개발청(LPJK)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등록증 발급기능이 향후 공공사업주택부로 이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6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인력 운용

2.6.1 직원의 요건

건설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자격증을 소지한 특정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들은 아래와 같은 4가지 주요 역할을 수행합니다.

- (a) 건설업체 대표자(PJBU): 서비스 제공자 조직 내에서 최고 업무 책임자 (예: 건설 대표사무 소장 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
- (b) 기술책임자(PJT): 관련 서비스 제공자 조직 내에서 기술 및 운영 측면을 감독하고 책임지도록 임명된 정규직 직원이
- (c) 작업책임자(PJK): 하나의 서비스 분야에서 기술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책임지도록 임명된 정규직 전문가
- (d) 기타 전문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서비스 제공자 조직 내에서 건설업체 대표자(PJBU) 및 기술책임자(PJT)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원은 각각 한 명씩입니다. 다만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 및 하위 유형에의 수에 따라 대형 서비스 제공사의 경우 여러 명의 작업책임자들과 전문가들을 둘 수 있는데, 이 역할들은 서로 다른 개인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체 대표자 외의 직원들은 전문가자격증 (SKA)을 소지한 전문가여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경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작업책임자(PJK)와 기술책임자(PJT)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임직원들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 하위 자격	전문가	작업책임자(PJK)	기술책임자(PJT)	건설업체 대표자 (PJBU)
건설 시공 서비스				
대형/B2	요구사항 없음	각 유형 별로 한 명의 작업책임자가 있어야 할 작업책임자들은 기술책임자와 동등 수준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한 기술책임자 건설업체 대표자는 겸임할 수 없음	기술책임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SKA Madya(중간 단계) 또는 SKA건설업체 전문가자격증 Utama (최고 단계)의 인증을 받은 전문가이어야 함 또는 기술책임자는 최소 6년의 경력이 있어야 함. 기술책임자는 작업책임자 또는 건설업체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음	반드시 건설업체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함. 건설업체 대표자는 작업책임자 또는 기술책임자로 겸임할 수 없음

자격 / 하위 자격	전문가	작업책임자(PJK)	기술책임자(PJT)	건설업체 대표자 (PJBU)
건설 통합 서비스				
대형/B2	요구사항 없음	최소 4명 이상의 작업책임자가 있어야 함. 작업책임자들은 기술책임자와 동등 수준 이상의 전문가자격증 인증을 받아야 함 작업책임자는 기술책임자 또는 건설업체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음.	기술책임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SKA Madya(중간 단계)의 인증을 받은 전문가이어야 함 기술책임자는 작업책임자 또는 건설업체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음.	반드시 건설업체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함. 건설업체 대표자는 작업책임자 또는 기술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음.
건설 컨설팅 서비스(설계 및 감리 서비스)				
대형/B	각 하위 유형 별로 SKA Madya(중간 단계) 전문가자격증 인증을 받은 정규직 전문가를 고용하여야 함. 이 전문가들은 작업 책임자 또는 기술 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음. 한 명의 전문가는 최대 2 개의 하위 유형에 속할 수 있음.	각 유형 별로 한 명의 작업책임자가 있어야 함. 작업책임자들은 최소 한 SKA Madya(중간 단계)의 전문가자격증 인증을 받아야 함. 작업책임자는 기술책임자 건설업체 겸임할 수 없음.	기술책임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SKA Madya(중간 단계)의 인증을 받은 전문가이어야 함 기술책임자는 작업책임자 또는 건설업체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음.	요구사항 없음.



2.6.2 전문가에 대한 보수 기준

건설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는 공공사업주택부규정 19/PRT/M/2017호에 규정된 전문가 보수 기준에 따라 전문가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는 기본급여(인도네시아의 원천 징수 소득세인 PPh 21 포함), 사회적 부담비, 간접비 및 이익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보수의 액수는 전문경험과 교육수준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공사업주택부가 정한 최소보수 기준보다 낮은 금액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비영리 건설회사의 경우 또는 개인 전문가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주택부가 정한 최소 보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최소 보수 금액은 공공사업주택부규정 897/KPTS/201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팀장 또는 공동팀장 등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최소 보수 외에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6.3 전문가 자격증 취득 과정

전문가의 경험 또는 경력에 따라 3가지 종류의 전문가 자격증(SKA)이 존재합니다. 최고 경력의 시니어 전문가는 'SKA Utama' 로 인증 받을 수 있고, 중간 단계의 전문가는 'SKA Madya' 인증 받을 수 있으며, 주니어 전문가는 'SKA Muda' 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자격증 인증을 받기 위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전문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학학위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학위	최소 요구 경력
SKA Utama (시니어 등급)	
학사 학위 (S1)	최소 5년의 경력
디플로마 4 (D4)	최소 6년의 경력
SKA Madya (중간 등급)	
학사 학위 (S1)	최소 2년의 경력
디플로마 4(D4)	최소 3년의 경력
디플로마 3 (D3)	최소 4년의 경력
SKA Muda (주니어 등급)	
학사 학위 (S1)	최소 1년의 경력
디플로마 4 (D4)	최소 1년의 경력
디플로마 3 (D3)	최소 3년의 경력

해당 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전문가들은 전문가자격증 인증을 받기 전 반드시 건설서비스개발청(LPJK)이 공인한 전문가협회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협회는 일반적으로 가입을 신청한 전문가에게 해당 전문가의 교육, 고용 및 경력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전문가자격증 인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협회는 일반적으로 연구기술 고등교육부 장관의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전문가 협회에 등록된 후 건설서비스 개발청에 직접 또는 관련 전문가협회를 통하여 전문가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건설서비스 개발청은 인터뷰 일정을 잡게 되며 SKA Utama의 경우에는 인터뷰 외에 필기시험도 진행합니다. 인터뷰와 필기시험의 일정 기준을 충족 할 경우 전문가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2.6.4 외국인 근로자의 운용

최근,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운용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통령규정 제20호를 제정하였습니다.

신설된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직책에 대하여 특정 기간 동안만 고용될 수 있습니다(즉, 무기한으로 고용 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시 현지 노동시장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모든 직책에 대해 현지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현지 노동자중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이 없는 경우에만 그 직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 될 수 있다고 해석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위 요건(현지 노동자 우선 채용 의무)을 엄격히 준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도 흔치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이용계획(RPTKA)을 마련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뒤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해당 절차는 투자조정청(BKPM)을 경유하여 진행 할 수 있다고 하나 실무 태도는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시 사전 확인을 요합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IMTA)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부 직책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가 제한됩니다.

- (a) 건설 대표사무소장
- (b) 인사부장(SCO Code1210) 혹은 인사/산업 관련 관리자, 교육 및 개발 책임자, 진로 상담사 등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인도네시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IM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a) 요건과 관련하여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의 서신(MPWH Letter No. HK.01.04-Mn/66 dated 18 January 2018 to Chairman of BKPM)을 통해 공공사업주택부는 동 규정의 의미를 RO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사항(Technical Operation)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내국인이 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RO의 형식상의 대표자까지 인도네시아 내국인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이에 대해 보상 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상 기금은 각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각 직책에 대해 매달 USD 100달러씩입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조할 인도네시아 현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현지 근로자들을 교육 및 훈련 시켜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도네시아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다만, 현실에서는 잘 준수 및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0% 현지 담당자의 지정은 지식 이전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고용주는 매년 노동부 장관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운용과 지식 이전 프로그램의 수행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와의 고용 계약을 해지 또는 조기 해지하는 경우 노동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OSS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이용계획(RPTKA)의 승인 신청 또한 OSS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2019년 상반기 기준까지 노동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SS 시스템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이용 계획(RPTKA)의 승인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6.5 외국인 근로자 운용 관련 다가올 변화

2017년 건설서비스법에 따르면 모든 건설전문가 또는 직원은 인증기관의 특정 역량시험을 바탕으로 그 역량인증서를 받아 인증되어야 하며 이를 공공사업주택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현재 건설서비스 개발청(LPJK)을 통해 수행되어 온 인증 및 등록기능이 조만간 인증기관 및 공공사업주택부로 이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만, 2019년 상반기 기준 이러한 인증 및 등록에 관한 시행규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2.7 실적 등록(Tanda Daftar Pengalaman)

2017년 건설서비스법에 따르면 중형 및 대형 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실적을 공공사업주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바, 이는 2017년 건설서비스법에 신설된 새로운 요건입니다.

2.8 건설서비스에 대한 최종 분리과세의 적용

건설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건설시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3%, 건설설계 및 감리서비스에 대해서는 4% 세율의 최종분리과세(Final Income Tax)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서비스 제공자가 건설사업자등록증(SBU)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시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4%, 건설설계 및 감리서비스에 대해서는 6% 세율의 최종분리과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업자등록증(SBU)의 취득은 건설업허가(IJK) 또는 건설 대표사무소 사업허가(IP-BUJKA) 발급의 선행 조건이므로, 외국인투자법인(PT PMA)나 건설 대표사무소(RO)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건설 대표사무소 등이 건설사업자등록증(SBU) 없이 건설대표사무소 사업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래에는 건설사업자등록

증(SBU)의 취득이 건설 대표사무소 허가(IPBUJKA)의 선전요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건설사업자등록증(SBU) 없이도 건설 대표사무소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제는 건설 대표사무소 설립 단계에서부터 건설사업자등록증(SBU)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최종분리과세는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원천 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 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서비스 계약 대금에 위 비율을 곱한 금액이 최종분리과세의 세액이 됩니다.

건설 대표사무소(RO) 또는 외국인투자법인(PTPMA)의 경우,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 소득은 송금세 내지 국내송환세(소득세 PPh 26)의 적용 대상이 되거나 또는 해당 국가와 인도네시아 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있는 경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9 환경 관련 허가

2009년 환경법에 따르면 환경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내의 모든 활동은 특정한 환경 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환경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환경 평가는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 (a)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AMDAL)
- (b) AMDAL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감시계획(UKL-UPL)
- (c)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환경관리/환경감시 능력에 관한 환경관리 서약서(SPPL)

AMDAL, UKL-UPL 및 SPPL중 어떤 문서를 구비하여야 하는지는 관련 프로젝트의 규모 또는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위와같은 문서를 구비 할 의무는 해당 프로젝트의 발주자인 서비스 이용자에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이러한 문서의 구비를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회사들은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소한 SPPL 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SPPL은 통상 건설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서류중 하나입니다.

AMDAL, UKL-UPL 및 SPPL의 구비절차는 2012년 정부규정 제27호, 2012년 환경부규정 제16호와 2013년 환경부 규정 제8호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9.1 AMDAL문서

AMDAL문서를 구비하여야 하는 프로젝트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로,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AMDAL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의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를 요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유형에 관한 2012년 환경부규정 제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MDAL문서의 구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프로젝트 계획의 공고
- (b) 공개 협의
- (c) AMDAL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환경평가 기준(terms of reference)의 준비
- (d) 환경평가(AMDAL 문서)의 준비
- (e) AMDAL 위원회의 AMDAL문서 평가
- (f) 관련당국의 환경 타당성 공문 발급
- (g) 관련당국의 환경 관련 허가 발급

2.9.2 UKL-UP문서

AMDAL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UKL- UPL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UKL-UPL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기준은 지방정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KL-UPL 문서의 구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UKL-UPL양식의 준비
- (b) 관련 당국에 의한 UKL-UPL평가
- (c) 관련 당국의 UKL-UPL 권고 발행
- (d) 관련 당국의 환경관련 허가 발급

2.9.3 SPPL문서

AMDAL 또는 UKL-UPL이 요구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SPPL문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SPPL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자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관련 문제들을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음을 진술한 서약서를 의미합니다.

SPPL문서의 구비 절차는 환경관련 허가에 관한 2012년 정부규정 제27호 및 환경관련 문서의 평가검증 및 환경관련 허가 발급의 지침에 관한 2013년 환경부규정 제8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 규정을 통해 SPPL문서 구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요건이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SPPL문서 구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SPPL문서의 준비

- (b) 관련 당국의 SPPL문서 검증
- (c) 관련 당국의 SPPL문서 등록

2.9.4 유해성 폐기물 및 유독성 폐기물 관리

유해성 폐기물과 유독성 폐기물의 관리, 처리 및 운송을 위해서는 2014년 정부규정 제101호에 따른 특별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통상 서비스 이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허가를 갖춘 전문 업체에게 이러한 작업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9.5 OSS 시스템을 통한 환경허가 발급 신청

OSS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환경 관련 허가 또한 OSS 시스템을 통하여 발급 될 수 있습니다. 환경 허가의 발급은 사업 허가 발급을 위한 전제조건이 됩니다. 사업이 특별경제구역, 산업구역 또는 자유무역구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경관련 허가를 발급 받을 필요까지는 없으나, UKL-UPL 문서를 구비하여 해당 구역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 관련 허가 발급을 신청 할 경우 신청자는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문서(AMDAL 또는 UKL-UPL)를 추후 구비 완료 할 것이라는 '확약서' 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자가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OSS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는 확약서등을 검토하여 환경 관련 문서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 재량에 따라 환경 관련 허가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는 이후 확약서에 따라 환경 관련 문서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공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환경 관련 문서(특히 AMDAL의 경우)를 구비하는데에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새로운 절차는 환경 관련 허가의 신속한 발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앞서 설명한 유해성 폐기물 및 유독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 허가와 관련하여, OSS 시스템은 이를 환경허가로 통합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더 이상 유해성 폐기물 및 유독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허가를 별도로 신청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10 사업별 주요 허가 사항

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분야별로 특정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각 분야별 허가의 종류와 발급기관, 발급방법, 발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본 해설서의 별점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운영업, 전력공급 사업, 공항 운영업, 항만 운영업, 산업단지 운영업, 아파트 개발업 등)



2.11 수입 허가증

특정 상품을 수입하고자하는 회사는 반드시 수입업자 식별번호(API)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무역 부장관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품은 (중고가 아닌) 신상품이어야 합니다.

수입업자 식별번호(API)에는 일반 수입업자 식별번호(API-U)와 생산자 수입업자 식별번호(API-P)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업용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인도네시아 내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반 수입업자 식별번호(API-U)를 취득하여야 하며, 특정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본재(예를들어 기계류등) 또는 원자재를 수입하고자하는 기업은 생산자 수입업자 식별번호(API-P)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PT PMA)의 경우 무역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투자조정청(BKPM) 수입업자 식별번호를 발급합니다. 많은 경우 상품의 수입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서비스 이용자(프로젝트 발주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일부 발주자들이 기계류등 자본재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설 대표사무소(RO)의 경우에는 수입업자 식별번호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업자는 관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세시스템 등록은 인도네시아 국가단일창 시스템 공식홈페이지(www.insw.go.id)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시 수입상품, 과학적 연구개발용 상품, 판촉용상품 및 견본상품의 수입에는 이러한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입 신고서는 매번 수입이 이루어질 때마다 항구에 수입품이 도달하기 전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 신고서 제출을 위한 절차는 재무부규정 228/PMK.04/201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OSS 시스템 하에서 기업들은 사업고유번호(NIB)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사업고유번호(NIB)는 수입업자 식별번호(API) 및 관세 접근(custom access)으로 기능합니다. 즉 기업들이 사업고유번호(NIB)를 발급 받았다면 더 이상 수입업자 식별번호(API) 및 관세 접근을 별도로 신청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2.12 기타 허가

앞서 살펴본 다양한 허가 또는 승인 외에도 건설 프로젝트의 개시를 위해서는 건축허가, 특정 개발허가(예를 들어, 공항 개발 허가, 항만 개발 허가 등) 굴착 허가, 수중작업 허가, 폭발물사용 허가 등 기타 다른 허가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